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

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-

2023. 12. 2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(요약)

Ⅰ 추진배경

□ **(경과)** '22.1월 **중대재해처벌법***('중대법') 시행되었으나, **50인 미만** 사업장 및 **50억원 미만** 공사는 **2년간 적용유예**('24.1.27 시행)

*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

○ '22.11월 「**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*」을 마련하여 기업의 **자기규율 예방체계*** 확립, **중소기업** 지원강화, **안전문화** 확산 등 추진

*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, 수사감독 개편,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

□ **(50인 미만 사업장 적용)** 중대법이 **5~49인 사업장**까지 **확대 적용** 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**대폭 증가**(약 +83.7만개)

○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**인력·예산** 여건 등 감안시 **단기간내 이행담보 곤란** → **경제단체·업계**에서 **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**

Ⅱ 추진방안 주요내용

1.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□ **(추진단 구성·운영)** 관계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및 협·단체 등 **민관합동 추진단**을 구성·운영하여 대책의 **총괄·조정** 기능 수행

□ **(산업안전 대진단)** 50인 미만 사업장(83.7만개) 대상 **전수 자체진단** 실시 → **중대재해 위험도** 등에 따라 **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**('24.2월~)

* (중점관리)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+ 지원신청 기업 등(+α) 선정
(일반)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

□ **(맞춤형 지원 연계)**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**안전관리 역량 확충**(컨설팅·인력 등) 및 **작업환경 안전개선** 지원('24.3월~'26.1월)

* (중점관리)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→ 시설개선 →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
(일반) 교육·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, 협·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

2.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□ **[컨설팅] 위험성평가** 지원 등 위한 **컨설팅*** **확대**('24년, 2.7만개), **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** 확대('24년, 1,200개) 등 **'24년 2.8만개** 지원

*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

□ **[인력양성] 교육·인건비** 지원확대 등 통해 **'26년까지 2만명*** 양성

* ('24) 4천명 → ('25) 8천명 → ('26) 8천명

○ 안전보건공단 **전문교육과정** 및 산업안전 **전공학과** 확대, 안전관리자 **자격인정** 요건 완화 등 추진

○ 지역·업종별 협·단체 등의 **공동안전관리전문가** 선임 지원('24년 600명)

□ **[교육·문화] 소규모 사업장·지역산단·외국인력** 등 대상별 맞춤형 **안전교육**을 강화하고, **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*** 개발·보급

*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, 교육자료, 자율점검표, 사고속보 등 제공

○ **자체 안전문화 진단·개선** 위한 **안전문화 평가지표**(KSCI) 개발·보급

※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등 '24년중 약 31.6만개, 1,200억원 재정 투입

3.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□ **[설비·장비]** 안전투자 **장기저리 융자**를 **확대**('24년, 2,600개)하고, **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** 지원 확대('24년, 1.7만개)

○ **50인 미만** 제조업 사업장의 **노후·위험공정 개선비용**을 지원하는 **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** 확대('24년, 4천개)

○ **"스마트공장+스마트안전"** 구축 위한 **부처협업형 모델*** 확대, **고위험 산단** 대상 **안전모니터링 시스템** 설치지원 확대

* (중기부)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, (고용부)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

□ **[R&D]** 사업장 **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** 구축 지원 위한 **연구과제**를 추진('24년, 48개 과제)하고, **제조업·건설업** 안전 R&D 추진 검토

※ 안전장비·설비 등 확충을 위해 '24년중 약 2.4만개, 9,300억원 재정 투입

4.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□ **[협·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]** **경제단체** 및 업종별 **조합·협회, 산단별**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 중심으로 **맞춤형 지원시스템** 마련

○ **업종별 협회** 중심으로 **공동컨설팅·안전매뉴얼** 보급 등 확대, **협동조합** 중심 **안전보건협의체** 구성 및 안전 패키지 지원

○ **산업단지공단** 중심 「**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**」 기능* 확충,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**산단 안전주치의**로 배정·지원 추진

*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, 지도·점검 합동실시, 패키지 지원 등

□ **[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]** **원청**이 **협력업체**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**상생협력 프로그램*** 확대, **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** 강화

*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 일부(50%)를 정부가 분담

○ **대기업**의 **중대재해 예방 상생협력**에 대한 **인센티브*** 부여, **원·하청간** 산재예방 **역할 명확화** 위한 **가이드라인** 보급('24.上)

*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, 산업안전 ESG 우수기업 지원강화, 재정지원 우선 선정 등

※ **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·추진('24.上)**

○ 건설분야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·한도확대***, **공공기관**의 **수급업체** 지원 **인센티브**(경영평가 등) 확대 및 **우수사례** 확산 추진

* 現 요율의 15~20% 상향 검토,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·폐지 등

□ **[안전보건산업 육성]**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·장비·R&D 등 **산업안전 연관 분야**의 **종합적인 육성**을 위한 방안 마련('24년)

○ 민간 **재해예방기관·안전교육기관**을 활성화하고, 혁신제품 **판로지원** 등 통해 **안전보건시장** 확대, **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** 제정 검토

◇ **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,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「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」 추가 마련('24.下)**

※ '24년중 **1.2조원** 예산투입 + 간접 투입효과 → 총 **1.5조원** 규모 지원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····· 6

Ⅲ. 세부 추진방안 ····· 7

1.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····· 7

2.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····· 10

3.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····· 14

4.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····· 16

Ⅳ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21

[별첨]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····· 22

Ⅰ. 추진배경

1 그간의 추진경과

□ **[중대재해처벌법 시행]** '22.1월부터 **중대재해 예방·감축**을 도모하기 위한 **중대재해처벌법**('중대법') 시행·적용중

○ 이에 따라 **사업주·경영책임자**등에게 **중대산업재해*** **예방**을 위한 **안전보건관리체계**** **구축·이행**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여

*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

**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확보,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(위험성평가) 등

○ 同 의무 위반으로 **중대산업재해 발생시**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에 대한 **처벌 강화**(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
○ 법 제정시 상시근로자 **50인 미만 사업장** 및 공사금액 **50억원 미만의 공사**에 대해서는 **2년간 적용 유예**('24.1.27 시행)

□ **[정부 정책·노력]** 기업들이 중대법상 **의무**를 **이행**하고 자율적으로 **안전보건관리체계**를 **구축**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**정책적 노력** 추진

○ '22.11월 **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」**을 마련·발표하여 기업의 **자기규율 예방체계** 확립을 새로운 산업안전 패러다임으로 제시

* ❶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, ❷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, ❸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, ❹산업안전 거버넌스 정비

○ 同 로드맵을 기반으로 **건설·제조업**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**교육·컨설팅·장비** 등 **지원중**

<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한계 >

◇ 그간 정부는 **중대재해 감축**을 위해 **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** ('22.11.30) 마련 + **컨설팅·교육** 및 **기술지도** 등 **정책적 노력** 추진

1 **[중대재해 감축 로드맵]** ①위험성평가 중심 **자기규율 예방체계** 확립, ②중대재해 **취약분야 집중 지원**·관리, ③**안전의식·문화 확산** 등 추진

- **(위험성평가 확산·안착) 근로자 참여** 확대 및 결과공유 방안 마련 등 전면적인 **제도개편** 완료('23.5월)
- **(예방점검 확대)** 노·사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·개선토록 지원하는 **'위험성평가 특화점검'** 중심으로 감독체계 혁신(2만개소 점검 완료, '23.10월말)
- **(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)**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**건설사가 시공**하는 **다른 공사현장**(25% 내외)도 **감독** 실시 + **현장점검의 날**(매월 2회) 운영
- **(안전교육 강화)**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**안전교육 제도개선 방안**('23~) 마련, **외국인 근로자** 송출국(16개국) 언어로 안전보건교육 **교재 개발·보급** 지속
- **(정보공개 확대) '중대재해 사이렌**(오픈채팅방)' 통해 사고현황·위험요인·안전수칙 등 **정보공유**(420건), **「중대재해 사고백서」** 통해 중대재해 **발생원인** 등 **분석·제시**
- **(안전문화 확산)** 지역별 **'안전문화 실천추진단'**('23~) 발족 및 **안전문화** 확산

2 **[중소기업 지원]**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에 대비, **컨설팅·교육** 및 **기술지도** 등 **집중 지원** → '22~'23년중 **45만개소 旣지원**

- **(컨설팅) 고위험 사업장**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→ 약 **1.6만개소**
- **(교육)**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→ 약 **7.8만개소**
- **(기술지도)** 핵심안전수칙(보호구 착용, 안전점검 실시 등) 제공, 주요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·개선지원 → 약 **36만개소**

⇒ **중대재해 사망자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,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,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**

2 現 상황 진단

□ **[중대재해 현황]** '22년 이후 중대재해 **사고사망자**는 **소폭 감소**하는 추세이나, 소규모 사업장 등 **취약분야**에 사고 **집중**

○ '22년의 경우 **전년대비 △5.7% 감소**하였으며, '23.1~9월의 경우 **전년동기 대비 △10% 감소**

< **중대재해 사망자수 및 비중** (단위 : 명, %) >

구분	전체	50인 미만 (50억원 미만)		50인 이상 (50억원 이상)	
'21	683	435	(63.7)	248	(36.3)
'22	644	388	(60.2)	256	(39.8)
'22.1~9월	510	308	(60.4)	202	(39.6)
'23.1~9월	459	267	(58.2)	192	(41.8)

* 출처 :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통계 ** 50억원 이상/미만은 건설업 기준

○ **[규모별]**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0% 수준을 차지하여 **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**가 요구

○ **[업종별]**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중 **건설·제조업** 분야가 각각 **53.6%, 25.8% 차지**('23.9월말 기준)

□ **[기업현장 상황]** 법 시행 초기단계로, 아직까지 기업들의 **자기규율 예방체계**로의 전환 및 **안전의식·문화** 확산 등 진전 **미흡**

○ 기업들은 중대재해 **예방체계 구축** 및 내실있는 **이행**에 **부담·애로**를 겪고 있고, **관계법령·제도 개편 필요성**을 **지속 제기**

○ **중소기업** 중심으로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에 필요한 **정부지원 확충** 및 **민간역량 활용** 등을 요청

3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

□ **[적용대상]** 중대법이 **50인 미만**(5~49인) **사업장**까지 **확대 적용** 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**대폭 증가** → 약 **83.7만개**

< 규모별 사업장 현황 ('23.6월말, 단위 : 천개소 **>**

구분	합계	5인 미만	5~50인 미만	50~300인 미만	300인 이상
전체	3,439	2,530	837	62	9
제조	374	244	118	10	1
건설	686	532	142	10	2
기타	2,379	1,754	577	42	6

* 출처 : 고용노동부

□ **[대응여건]** 법 적용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부여되나, **열악한 인력·예산** 등 여건 감안시 **단기간내 이행 담보 곤란**

○ 이에 따라 **경제단체·업계**에서 법 **적용유예 연장** 및 유예기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**정부지원 집중** 등을 요구하는 상황

< 안전보건확보 의무 >

■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**(9개)

조치 사항	50인 이상	50인 미만
① 안전보건 **목표·경영방침**의 설정	○	○
② 안전보건 **전담조직***의 설치 *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,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(산안법§17~19, §22)	△	X
③ **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**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	○	○
④ 안전보건 **인력·시설·장비**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**예산**의 편성·집행	○	○
⑤ **안전보건관리책임자** 등의 업무수행 지원, 평가 및 관리 *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	○	△
⑥ **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** 등 배치 *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, 20~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, 임업, 하수·환경·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	○	△
⑦ **종사자 의견청취** 및 개선방안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	○	○
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**매뉴얼**의 마련, 조치여부 점검	○	○
⑨ **도급·용역·위탁시**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	○	○

■ 관계법령상 **의무이행·관리**(4개), **재발방지대책**(1개) 및 **시정개선**(1개) 조치 등 부여

< 中企·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>

조사기관 (조사기간 및 대상)	주요내용	건의사항
중기중앙회 ❶ '23.8.23~25,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社 ❷ '23.10.16~18, 5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社	▪ 중소기업의 **80.0%**가 **법 시행에 대비**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* **(미흡사유)** ❶**전문인력** 부족(38.2%), ❷**예산 부족**(27.4%), ❸**의무이해 곤란**(22.8%) 등 응답	▪ ❶안전부문 **재정·세제지원**(45.0%), ❷**법 해설서** 등 지침 제공(18.9%), ❸**컨설팅** 확대(17.3%), ❹전문인력 채용·활용 지원(10.3%) 등을 정부에 요구
	▪ 중소기업의 **83.7%**가 **법 적용에 우려*** 표명 * ❶대표이사 실형 가능성(34.6%), ❷안전비용 증가(24.1%), ❸준비사항 불분명(20.1%), ❹수사기관 등 사법대응 부담(15.2%) 등 응답	▪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**가장 시급한 통과 필요**한 법안으로 **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요구**(47.0%)
대한상의 ※ '23.10.11~27, 50인 미만 중소기업 641개社	▪ 중소기업의 **76.4%가 법 시행 대비**에 **미흡한 상황** → **89.9%**가 **적용유예 필요** 응답 * **(미흡사유)** ❶방대한 **법 준수사항**(53.7%), ❷**안전인력 확보 애로**(51.8%), ❸**과도한 비용** 부담(42.4%) 등 응답	▪ 업종별 ❶**매뉴얼** 배포(59.0%), ❷**안전 인력·인건비** 지원(49.8%), 안전투자 등 ❸**재정·세제**지원(47.6%) 등 요구
건설협회·건설연 ※ 전문건설사 781개社	▪ 건설사 **96.8%**가 **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**으로 파악 → **법 적용 제외** 또는 **유예** 필요	▪ **중대재해 요건 완화**(51.2%), **안전보건의무 축소**(34.4%) 등 **법령 개정**과 함께, **안전역량 확충**을 위한 다양한 **지원방안** 요구
경총 ※ '23.11.14~22, 50인 미만 기업 1,053개社	▪ 응답기업의 **45%**가 **안전전문 인력**이 없으며, **82%**는 **컨설팅 지원을**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	▪ ❶**매뉴얼** 보급(33%), ❷**전문인력** 지원(32%), ❸**안전설비** 비용 지원(17%), ❹**컨설팅** 지원(13%), ❺**교육** 지원(5%) 등 요구

Ⅱ.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
추진 목표	◈ '24~'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을 **집중 지원** → **중대재해 획기적 감축*** 추진 * [사고사망만인율] ('22년) 0.43‰ → ('26년) 0.29‰
기본 방향	◈ **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** 및 대상별 **맞춤형 지원*** 추진 * 컨설팅·기술지도, 인력·교육,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◈ **산업안전 생태계 조성**을 위해 **민간참여** 및 **인프라 확충** 병행

추진 분야	세부 과제
1 **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**	1 민관합동 **중대재해 대책 추진단** 구성 2 **대진단 실시** 및 사업장별 **맞춤형 지원** 연계
2 **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**	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**컨설팅·기술지도** 지원 4 안전보건 **전문인력** 양성 등 지원 5 **안전교육** 강화 및 **안전문화** 확산
3 **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**	6 **안전장비·설비** 등 지원 확대 7 **R&D** 지원 강화
4 **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**	8 **협·단체** 및 **산업단지** 중심 지원 확대 9 원·하청 **산업안전 상생협력** 및 건설분야 **하도급 안전관리** 강화 10 **안전보건산업** 육성

⇒ **'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'10대 과제' 역점 추진,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'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**

※ '24년중 **1.2조원** 예산투입 + 간접 투입효과 → 총 **1.5조원** 규모 지원

Ⅲ. 세부 추진방안

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◇ **(현황)** 중대법 **적용대상**이 **대폭 확대**되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중대재해 **취약성** 및 **대응여건 상이**

⇒ **(대응방향)**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**중점관리** 및 **일반사업장 선정**, 대상별 **맞춤형 지원** 추진

1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· 운영

○ **(추진단 구성·운영)** 관계부처·공공기관·지자체 및 협·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**「중대재해 대책 추진단」 구성·운영**('24.1월~)

-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**을 **지원**하기 위한 **대책**의 **총괄·조정·구체화** 기능 수행

-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**추진상황 점검** 및 **보완**, 추진과제 **실무협의·조정** 등을 위해 **실무 T/F** 설치

- 협·단체 협력하에 **현장 전수점검** 및 **지원 연계성 강화** 등을 위해 **민관 협력단** 구성·운영

< 추진체계 >

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(단장 : 고용노동부 차관)	
실무 T/F	**관계부처·공공기관** - 추진상황 점검 총괄 - 보완과제 검토 마련 등
민관 협력단	**협·단체, 지자체, 전문가 등** - 현장상황 점검·환류 - 현장애로 발굴·취합

2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연계

○ **(산업안전 대진단)** 민관 협력단이 함께 5~50인 미만 사업장 **83.7만개** 대상 **전수 자체진단** 실시 → **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** 선정('24.2월~)

- **업종·재해현황·위험기계 보유**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**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+α 선정**

- **중점관리 사업장 외**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**지원대상**으로 **선정**

<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기준(안) >

▸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시 **업종별 특성** 및 **사업장 특성** 등 고려

- **(업종별 특성)** 사고사망자 비중, 사업체수,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
- **(사업장 특성)** 산업재해 현황, 위험기계·기구 보유 현황, 작업환경, 화학물질·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

○ **(맞춤형 지원 연계)**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**안전관리 역량 확충**(컨설팅·인력 등) 및 **작업환경 안전개선** 지원('24.3월~)

- **(중점관리)** 8만개+α는 ❶**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** → ❷**시설개선** 등 재정지원 → ❸필요시 **전문인력 배치** 등을 **패키지** 지원

- **(일반)** **교육·기술지도**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, **보완 필요 사항**에 대해 협·단체 **지원 프로그램** 연계

○ **(점검·피드백)** 민관 협력단을 통해 **지원 상황**을 수시로 **점검**하여 추가적인 **보완사항** 등 해소

- 현장의 **애로사항 청취** 및 **규제개선 과제** 등을 발굴·검토하기 위해 **범정부 실무 T/F 수시 가동**

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(안)

산업안전 대진단

-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(83.7만개 전수)

·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
· 민관합동 진단 추진

사업장 분류

- (중점) 8만개 + α
- (일반) 중점관리 사업장 外

·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

❖ 맞춤형 지원 연계 : (중점) 단계적 패키지 지원 / (일반) 신속 개선유도

중점관리 사업장 (8만개+α)

- 단계적 진단·구축 + 패키지 지원

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**컨설팅** →
❷ **위험시설** 및 **공정** 등 개선지원 →
❸ 공동안전관리자 등 **전문인력** 지원

·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(우선 배정)
  * ('24년 지원물량) 컨설팅 2.8만개, 시설개선 1.5만개, 공정개선 4천개 등

+

일반 사업장 (중점관리 사업장 外)

- 자체적 **개선유도** 및 **교육·기술지도** 등 지원
- 현장여건에 따라 **시설·공정** 개선, **전문인력** 지원 등도 연계
- 필요시 **협·단체**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

· 교육·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
· 협·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
  * ('24년 지원물량) 교육 7.2만개, 기술지도 21.6만개 등

⇒ '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**'25년 지원물량 확충**

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◇ **(현황)** 50인 미만 사업장은 **인력·예산 부족**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자체적인 **중대재해 예방역량**을 갖추기 **여의치 않은** 상황

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"법 시행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어야 했지만,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, 사람도 돈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"

⇒ **(대응방향)**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**컨설팅·교육 확대, 전문인력 양성** 및 **취약부문 우선배치** 추진

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· 기술지도 지원

○ **(중소기업 컨설팅 지원)** **중소규모 제조·건설업 사업장**에 **위험성 평가** 지원 등을 위한 **컨설팅 대폭 확대**('24년 2.7만개)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(제조업) 300인 미만(50인 미만 중심), (건설업) 시공순위 200위 초과
[지원내용]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
[지원기관] 산업안전보건공단('안전보건공단'),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

-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**자율점검표** 제공 후 미흡한 부분 집중 지원, **사업장 순회점검**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으로 지원

- **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***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진단·인증 관련 사업 추천 등을 통해 **자기규율 예방활동** 지원

  * 각종 산재예방 관련 민원신청, 법령, 사업소개, 사업장 위험도 예측 서비스 및 안전보건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

산업안전 컨설턴트 교육

산업안전 컨설팅 전후 개선사항

○ **(건설현장 컨설팅 지원)** **중소규모 건설현장**에 대해서는 **안전 컨설팅 지원**을 **지속 확대** 추진('24년 1,200개)[국토부]

* **[지원내용]**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어 안전교육 실시, VR 체험교육, 지자체 협업 집합교육,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**[지원기관]** 국토안전관리원

○ **(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)** 중대재해예방 **바우처 신설**을 통해 **제조 소기업**의 안전장비 구비 등 **패키지 지원**('24년 100개)[중기부]

* **[지원대상]** 주업종이 제조업 +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**[지원내용]** 중대재해예방 컨설팅(필수) → 기술지원, 마케팅(선택) **[지원기관]*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○ **(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)** 사업주·경영관리자층 대상 **토론형 교육**, 외부전문가 **멘토링** 및 **위험방지 시스템** 구축 등 추진 검토[고용·중기부]

* **[지원대상]** 중소기업(50인 미만 기업 중심) **[지원내용]**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, 안전경영문화 확산,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 (산업안전 AI 분석, 작업자 알람서비스 등) 구축, 안전 캠페인 등 **[지원기관]** 대한상의

○ **(기술지도 내실화)** 제조·건설, 서비스 등 **업종별 특화**된 유해·위험요인 발굴·개선 등 통해 **기술지원 서비스 품질** 제고[고용부]

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

○ **(안전보건관리자 양성 확대)** '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**2만명***양성될 수 있도록 **양성교육, 학과신설, 자격확대** 등 추진[고용부]

* ('24) 4천명 → ('25) 8천명 → ('26) 8천명

▪ **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***을 통해 매년 **4천명**의 **실무경험**을 갖춘 **안전관리인력** 양성('24~'25년)

* (건설업) '22~'23년중 한시 운영중인 교육을 '25년까지 연장 → 매년 2천명 양성
(비건설업) '24년부터 실무경력자 대상 양성교육 신설 → 매년 2천명 양성

▪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**산업안전 전공학과**를 신설, 대학내 **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** 및 **일학습병행 교육과정** 등 확충

▪ 공학·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**산업안전** 관련 **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**(산안령 개정, '24.上)

○ **(안전관리전문가 지원)** 50인 미만 사업장이 **안전관리전문가** 등을 **공동으로 활용·채용**할 수 있도록 **지원방안** 강구[고용부]

▪ 지역·업종별 협회·사업주단체 등이 **공동안전관리전문가**를 **채용**토록 **지원을 신설**하고,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 수행('24년 600명)

*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업종별 협·단체 주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고, 안전보건공단이 수행·평가 및 인건비 등 지원

▪ **지역고용센터**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**자격 소지자** 등을 **안전관리자 구인기업**에 **우선 채용**될 수 있도록 지원

3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

○ **(체계구축 교육 확대)**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**교육지원** 확대 및 **특화교육** 실시('24년 7.2만명)[고용부]

▪ **(소규모 사업장)** **다양한** 안전보건교육 **콘텐츠 개발·보급*** 등을 통해 **소규모 사업장** 대상의 **특화교육** 제공('24년 1.5만명)

* 숏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,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, 소업종·직종별 세분화된 교재·교안 개발 등

▪ **(지역산단 안전교육)** 지역별 **고위험 산업단지**를 선정하고 입주 기업 **사업주·경영관리자층** 대상의 **교육*** 실시('24년 6천명)

* 위험성평가 교육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 운영

○ **(외국인력 안전교육)** **외국인 근로자** 및 외국인 고용 **사업주** 대상으로 **맞춤형 교육지원 패키지*** 지원('24년 5천명)[고용·국토부]

* 다양한 외국어로 안전수칙 등을 숏츠·문자·애니메이션 등 통해 제공, 체험형 VR 교육,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등

○ **(안전관리 활동지원)** **중소 건설현장**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손쉽게 확인·공유할 수 있는 **시스템**(App) 개발(~'24년) 및 보급('25년~)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 **[지원내용]**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공정별 핵심 위험요인, 재해예방 교육자료, 자율점검표, 사고사례, 사고속보 등 제공 **[지원기관]** 안전보건공단

○ **(안전문화 확산)** 사업장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 등을 위해 **K-안전문화 평가지표**(KSCI) **개발·보급** 확대('24년) 추진[고용부]

▪ 안전보건공단-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**안전문화 캠페인·활동** 전개

※ **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❶컨설팅 및 ❷교육·❸기술지도 지원 등 "3층 체계" 강화** ⇒ **'24년중 약 31.6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지원 등을 위해 약 1,200억원 재정 투입**

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◇ **(현황)** 소규모 사업장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**안전장비·설비** 확충 및 **R&D 투자**가 선행되어야 하나, 기업 **자체적 추진여건 미비**

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"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시 안전예방 인력·장비 등 지출 경비가 부담되어 정말 힘들어질 것"

⇒ **(대응방향)** 정부 재정투입 보강 등을 통한 **장비·설비·R&D** 확충

1 안전장비 · 설비 등 지원 확대

○ **(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)** 사업장내 **고위험 설비**의 **공정** 등을 **개선**하기 위해 **장기저리 융자 확대**('24년 2,600개)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(※ '22년, 50인 미만 사업장에 98% 지원)
[지원내용]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[지원기관] 안전보건공단

○ **(스마트 안전장비·시설)**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**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** 등 **지원** 확대('24년 1.7만개)[고용·중기부]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규모
▸ **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**[고용부]	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	최대 3천만원	11,732개
▸ **스마트 안전장비 보급·확산**[고용부]	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,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		2,544개
▸ **건강일터조성**[고용부]	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	최대 5천만원	373개
▸ **클린 제조환경 조성**[중기부]	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	최대 420만원	2,000개

▪ **대기업**이 **스마트 안전장비** 등을 **협력사**로 보급·확산하도록 **동반성장지수 평가**에 반영('24년 동반위)[중기부]

○ **(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)** **50인 미만** 제조업의 **노후·위험공정 개선비용**을 지원하는 **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** 확대('24년 4천개)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, 원·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·중소기업
[지원내용]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~50%(최대 1억원)
[지원기관] 안전보건공단

▪ **공정개선 안전성 확보**를 위해 위험기계·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**안전성 평가** 및 **인증 추진**('24년 9.1만건)

○ **(안전 작업환경 조성)** 화학물질 등 **유해인자 노출 방지**를 위해 **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지원**('24년 8.8만개)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유해인자(화학물질, 소음 등)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**[지원내용]** (신규사업장)측정비용 전액(100만원 한도), (기존사업장)측정비용 80%(40만원 한도) **[지원기관]** 안전보건공단

○ **(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)** 중소 제조기업에 **"스마트공장+스마트 안전"**을 도입하기 위한 **부처협업형 모델***을 확대('24년 10개)[중기부]

* (중기부) 첨단기술(IoT, AI 등) 통한 고도화 구축 지원, (고용부) 컨설팅·스마트 장비 지원

○ **(스마트 안전산단 구축)** **고위험 산단** 대상 **스마트 안전솔루션·안전 감시설비 설치 지원**('24년 6개 산단 시범사업 후 '25년부터 대상 확대)[산업부]

* **[지원대상]** 시설 노후화, 위험물질 취급 등 산단내 고위험지역(6개 산단 시범사업中) **[지원내용]** 산단내 특별안전구역에 첨단 CCTV·감지센서 등 안전솔루션 및 안전감시장비 설치비용 지원 **[지원기관]** 산업단지공단이 민간컨소시엄을 선정·추진

2 R&D 지원 강화

○ **(안전보건연구)** 사업장의 **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**을 강화하기 위한 **산업안전·작업환경** 등 연구 추진('24년 48개 과제)[고용부]

○ **(제조안전 R&D)** **50인 미만** 제조기업의 재해예방·대응을 위한 **기술개발 지원사업** 검토('24년~)[중기부]

* **[지원대상]** 공급기업과 도입기업(50인 미만 제조기업)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**[지원내용]** ❶작업자 행동, ❷위험기계 관리, ❸화재·폭발·누출, ❹안전점검 분야 등 **[지원기관]**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○ **(건설안전 기술개발)** **건설현장**의 **위험성 저감**을 위한 **기술개발 지원** 및 보급형 **안전장구 개선** 추진 등 검토[국토부]

- 안전 관련 **민간기술** 활용 증대를 위해 **최소안전기준** 및 **실증 여건** 등 제공('24년) → 실효성 검토 후 **소규모 현장지원** 추진

※ **'24년중 약 2.4만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·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약 9,300억원 재정 투입**

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◇ **(현황)** **기업별** 다양한 **상황·수요**에 맞추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·중대재해 예방지원만으로는 **한계**

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"안전시설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을 정부의 몫으로 맡기기보다 민간 주도의 원·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생태계 조성이 바른 대안"

⇒ **(대응방향)** **협·단체 중심 지원**, 원·하청 **산업안전 상생협력** 및 건설분야 **하도급 안전관리 강화, 안전보건산업 육성** 기반 조성 추진

1 협 · 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

○ **(협·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)** **경제단체** 및 **업종별 조합·협회**가 중심이 되어 **업종별 특화된 지원체계** 마련[국토·중기부]

- **공동컨설팅**, 안전보건관리체계 **가이드라인 보급**, 안전관리 **사례 공유**, 전국 순회 **설명회** 대폭 확대
- **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*** **안전매뉴얼**을 제작·보급하고, 협동조합 중심 **안전보건협의체** 구성 및 **안전시스템 패키지** 지원

  * ❶금속제련, ❷기계·금속·비금속, ❸화학·고무, ❹수제품·기타제조, ❺섬유제조업 등

- **협회·조합**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**업종별 특화 예방사업*** 기획·추진시, 정부 **인센티브** 부여 방안 검토

  * (조선업) 하청근로자 보호, (화학업) 화재·폭발 예방, (폐기물처리업) 끼임사고 예방

- 법 전면적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·소송비용 보장 등을 위한 **공제·보험제도 설계** 및 **상품 개발** 추진(중기중앙회·건설공제조합 등)

○ **(산단 통합안전관리)** 안전관리기관 **협의체**를 구성·운영하여 합동 **안전관리·안전지원** 추진[산업부]

안전관리기관 협의체 구성

종합안전관리 추진방향

기존		개선
· **(개별관리)**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·지도 · **(단순지원)** 안전 홍보·교육 중심의 예방활동	➜	· **(통합관리)** 기관별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통합제공 · **(지원강화)** 공동 안전관리 및 협업 과제·정책 추진

▪ **산업단지공단**을 중심으로 **분야별 안전관리기관***이 참여하는 「**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**」 기능** **확충**(현재 13개)

* 안전보건공단, 가스안전공사, 전기안전공사, 환경공단, 소방서 등

**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안내, 지도·점검 합동 실시, 지원사업 패키지화

▪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**안전주치의**로 배정하여 중소·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 **밀착 지원**('24년~)

2 원 · 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

【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】

○ **(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)** **중소기업**(협력업체)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**대기업**(원청) 중심의 **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**[고용부]

* **[지원대상]** 100인 이상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
[지원내용]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(50%)와 모기업(50%)이 분담 지원
[지원기관] 안전보건공단

▪ 안전보건 분야의 원·하청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**우수 모델 발굴·홍보**

< 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>

▸ **(포스코)** 자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**전문가**('22년 108개), 안전 **교육비**('22년 83개), 안전 **관리비**('22년 93개) 등 지원

▸ **(현대重)** 협력업체 대상(23년 78개) **안전교육**(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) 및 근로자 **안전물품**(안전화, 도수 보안경 등) **구매비용**('23년 41억원) 지원

▸ **(현대차)** ❶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안전보건공단간 **상생협력 MoU** 체결('23.11월) → **중소·협력업체** 대상으로 **안전교육**, **매뉴얼** 개발, **위험설비** 개선, **스마트 안전장비 도입** 지원 등 추진
❷**중소협력사**('23년 175개) 대상 **필수안전장치**(지게차 안전장치) 구입 및 **설비**(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) 비용(''23년 35억원) 지원

○ **(대기업 인센티브 확대)** 대기업이 **중대재해 예방 관련 상생협력 사업 참여**시 **인센티브 부여** 등 추진[고용·중기·금융위]

- 대기업이 자사·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,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지도시, 추진실적을 **동반성장지수 평가**에 **확대** 반영('24년 동반위)[중기부]

-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**정책금융 지원 확대** 검토('24년)[금융위]

-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 지원시 고용부 추진중인 **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**으로 **최우선 선정**('24년)[고용부]

○ **(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)**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**원·하청간 역할구분**, 안전비용 등 **도급계약시 반영사항** 등 기준* 제시('24.上)[고용부]

* 「가칭도급사업시 원·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 마련·보급

※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·추진('24.上)

【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】

○ **(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)**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를 위해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** 및 **사용한도 확대**(고시 개정, '24년)[고용부]

<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>

- **(개념)**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**발주자**가 **공사금액**에 **계상**하여 **시공자**에게 **지급**하는 비용
- **(대상)** 총공사금액 **2천만원** 이상의 건설공사
- **(계상)** 예정가격 작성시, 건설공사 발주자가 **공사종류** 및 **금액**에 따라 **대상액**(재료비+직접노무비)의 **2~3%** 내외로 계상
- **(사용)** 안전·보건관리자 **임금**, 스마트장비 등 **안전시설비**, **보호구**, 안전보건 **진단비**, 안전보건 **교육비**, **위험성평가 이행비용** 등

- 현장 여건에 맞게 **시공사**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**現 요율**의 **15~20% 상향*** 검토(고시 개정, '24년)

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·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 결정

▪ 건설현장의 **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확대**를 위해 **사용 한도**를 **단계적**으로 **개편·폐지***(고시 개정, '24.上)

* ('22~) 구입·임대비용의 20% → ('24) 40% → ('25) 60% → ('26) 80% → ('27) 폐지

▪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*** 방안 검토

* 건설분야 협회·조합 등 관련기관 및 기업현장 의견(예 : 근로자 재해공제 보험료 등) 지속 수렴

○ **(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) 공사단계별**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**안전보건대장* 작성제도 개편**(산안칙 개정, '24.1분기)[고용부]

* **(계획단계)** 기본안전보건대장(**발주자 작성**, 설계자에게 전달)
(설계단계) 설계안전보건대장(**설계자 작성**, 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)
(시공단계) 공사안전보건대장(**시공사 작성**, 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)

▪ 작성기준 **자료** 및 **제출시기** 명확화, **작성항목** 정비, 전문가 **확인시기** 구체화, **개선조치 의무** 명확화 등 추진

○ **(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지원) 공공기관**이 **발주한 건설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** 및 **우수사례 확산** 추진('24년~)[기재부]

▪ 공공기관 **안전관리등급*** 심사시 **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 배점**을 **확대**하고, 안전관리등급을 **경영평가****에 반영

*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·수준·성과를 종합심사 후 기관별 등급(1~5등급) 결정

** '산업재해 예방노력·성과' 항목으로 경영평가 계량 0.5점 반영

▪ 추진단 중심으로 수급업체 지원 **우수사례**를 **전체 공공기관**으로 **확산**

< 대형 공공기관의 우수 지원사례 >

▸ **(중부발전)** ❶**2천만원 미만** 공사에 대해서도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** 적용절차 수립
❷**1억원 미만** 건설공사 도급시 **외부전문가 기술지도**를 받도록 제도 마련

▸ **(LH)** ❶소규모 공사 **수급인**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**대면교육** 시행(326명 이수)
❷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**안전작업허가제** 시행 강화

▸ **(철도공단)** ❶안전관리자 **의무배치 미대상** 현장에 **안전관리자**를 **배치**토록 방침 수립·시행
❷안전관리자 배치비용에 대한 **대가기준** 마련

▸ **(농어촌공사)** ❶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수급업체 대상으로 **컨설팅** 실시(총 80개 현장완료)
❷건설현장 **관리표준 매뉴얼** 신설·시행

3 안전보건산업 육성

○ **(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)**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, 장비·R&D 등 **산업안전 연관 분야**의 **종합적 육성**을 위한 방안 마련('24년)[고용·국토부]

-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**산재예방** 및 관련 **산업 촉진, 안전보건서비스 확대**를 위한 **인력·평가체계 강화** 등 추진[고용부]

- 산업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**안전보건산업 진흥 법령** 제정 검토('24년)[고용부]

- **건설안전** 분야 **강소기업** 선정 및 역량강화·금융지원·시장 진입 등 단계적 **성장지원 방안** 마련('24.下)[국토부]

○ **(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)** **민간 재해예방기관***을 안전보건 분야의 **종합컨설팅 기관**으로 육성[고용부]

*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, 기술지도, 안전인증, 검사, 교육 등 지원(안전·보건·건설 등 13개 분야 1,368개 기관 활동중, '22.7월 기준)

-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**재해예방기관**의 **차등관리***를 통해 민간의 **안전관리서비스 품질**을 강화

* (우수)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선정 등 / (미흡) 불이익 처분 근거규정 마련 검토

○ **(민간 교육기관 활성화)** **안전보건 교육기관***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**등록요건 개편**** 등 제도개선 추진(산안령 개정, '24.上)[고용부]

* 근로자교육기관 187개, 직무교육기관 30개 등 전국에 총 217개 활동중('23.7월 기준)

** 분야별(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·건설안전) 교육기관 등록 허용,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·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 완화

○ **(안전보건 제품·서비스 시장 확대)** 안전보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**안전장비 확산** 및 **혁신제품 판로지원** 등 추진[고용·중기부]

- **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재정지원** 등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의 **산업계 보급 확대** 도모[고용부]

- 중소기업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장비 등을 **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**으로 지정하고, 다양한 **판로지원*** 추진[중기부]

*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중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연계 지원, 기업·제품 홍보, 매칭행사 참여 등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**중대재해 대책 추진단** 구성·운영 및 **산업안전 대진단** 실시 → **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** → 대상별 **맞춤형 지원** 연계 순차 추진

○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**조기에 체감**할 수 있도록 '24년초부터 **신속 추진**

○ **추진단·실무T/F** 회의 등을 통해 **이행상황** 수시점검 및 현장 **애로사항** 취합, **추가 보완과제** 발굴·추진

○ 연내 예산소요 과제는 필요시 **기금운용계획 변경**(재정당국 협의) 등을 통해 대응,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**예산안** 편성시 협의 추진

□ 추진단 **운영결과** 및 **현장 건의사항, 재정소요** 등을 반영하여 **「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」** 추가 마련('24.下)

○ **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**상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이번 **대책 시행완료**('24~'25년) 이후에도 **추가 지원방안** 지속 강구

추진내용	'24				'25				'26			
	1Q	2Q	3Q	4Q	1Q	2Q	3Q	4Q	1Q	2Q	3Q	4Q
▪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·운영('24.1~)												
▪ 대진단 및 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('24.2~)												
▪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('24.3~)												
▪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('24.下~)												
▪ 성과 진단 및 환류('25.上~)												
▪ 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마련·추진('24.下)												

별 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

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▪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·운영	‘24.1	고용부
▪ 중점관리 및 일반 사업장 선정	‘24.2	고용부
▪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	‘24.3	고용부

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▪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·기술지도 지원	‘24.1	고용·국토 중기부
▪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	‘24.上	고용·중기부
▪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*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및 「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」 개정	‘24.1	고용부
▪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*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	‘24.上	고용부
▪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	‘24.上	고용부

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▪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	‘24.1	고용부
▪ 스마트 안전장비·시설 지원	‘24.3	고용·중기부
▪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	‘24.上	고용부
▪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	‘24~	중기·산업부
▪ 안전보건 R&D 추진	‘24~	고용부
▪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	‘24	중기부
▪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	‘24	국토부
▪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	‘24.下	국토부

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■ 협·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	'24.上	중기부
■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,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	'24.上	중기부
■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	'24.3	산업부
■ 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	'24.1	고용부
■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	'24.上	고용·중기부 금융위
■ 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* 「(가칭)도급사업시 원·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」 마련	'24.上	고용부
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*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」 개정	'24.上	고용부
■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등 개정	'24.3	고용부
■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	'24~	기재부
■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	'24	고용부
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	'24	고용부
■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	'24.下	국토부
■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개정	'24.下	고용부
■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	'24.上	고용부
■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	'24~	중기·고용부